

2025년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

2025년도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설이나 단체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4. 2. 10.

강 진 군



1. 지원규모 : 70백만 원

2. 지원대상

-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 3(기금의 용도)에서 정하는 문화예술사업 및 시설 또는 단체에 지원
 -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 활동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지원
 - 전통문화의 발굴·전승보전을 위한 사업 및 조사·연구 활동
 - 문화예술의 육성·발전을 위한 시설의 건립과 개·보수
 -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나 사업
 -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단체가 추진하는 문화예술 활동사업

3. 지원 배제 대상

- 친목 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
- 선진지 견학 등 여행성 경비, 자체 체육행사 경비 등 소모성 사업비
-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각종 축제 등
- 전남 문화예술지원사업 선정 대상자 제외(이중지원 방지)
-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맞지 않는 사업비(인건비, 식비, 운영비)등
- 강진군에 주소를 두지 않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단체
- 정산서 미제출 및 증빙서류 미충족 단체
- 문화예술 진흥기금 관련 교육 미이수 단체

4. 지원기준

-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지원(개인 추진 사업 배제)
- 각종 지원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신규 사업 우선 지원
- 사업의 실현성, 기대효과, 사업간·단체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

5. 기금 지원 신청 및 접수

- 신청서 접수 기간 : 2025. 2. 12.(수) ~ 3. 4.(화) / 21일간
 -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 미접수
- 접수 처 : 강진군청 문화관광과 문예진흥팀(☎ 061-430-3343)
- 신청방법 : 우편 또는 직접 제출 ※ 이메일이나 팩스 접수 불가
 - (접수 마감일까지 18:00까지 신청단체에 한해 접수인정)
 - 우편 제출의 경우 봉투에 접수 마감일 소인이 찍힌 신청서는 유효
- 제출서류
 - 문화예술진흥기금 신청서 1부(별지 1호 서식)
 - 사업추진 세부계획서 1부(별지 2호 서식)

- 신청단체 회원명단 1부(별지 3호 서식)
-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(별지 4호 서식)
- 고유번호증 1부

6. 유의사항

- 각종 단체나 시설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신청 관련 서류를 각 1건씩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2건 이상으로 분할 또는 중복신청 하였을 시 지원 심의 시 우선 탈락됩니다.
- 인건비, 다과회 경비, 오·만찬 식대, 격려금 등 경상적 경비는 지원 되지 않으므로 사업비 산출 내역에 포함하였을 경우 심의에서 탈락 됩니다.

7. 문의처 : 강진군청 문화관광과 문예진흥팀(☎ 061-430-3343)

2025년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의 배점표

□ 평가단체 :

□ 평가내용

평가항목	평 가 지 표	배점		평점
		상	중	
1. 목적/기획의도 (20점)	○ 사업 운영방향의 지원사업 목적에 부합정도 ○ 전체계획의 합리성 - 일정관리, 인력운용 등 - 사업 공간 선정의 타당성	상	20	
		중	15	
		하	10	
2. 사업의 성과 및 실적 (20점)	○ 작년 사업 실적 및 활동 - 담당자 및 구성원의 전문성 여부 - 단체 주요활동 실적 여부 - 사업 추진을 통한 예술적 성과	상	20	
		중	15	
		하	10	
3. 예산의 적절성 (20점)	○ 단체 실적 및 예산편성의 적절성 여부 - 신청액의 타당성 - 적절한 예산운용 계획	상	20	
		중	15	
		하	10	
4. 자부담 확보 (20점)	○ 자부담 확보 노력 - 30% 이상 : 상 - 20% 이상 : 중 - 10% 이상 : 하	상	20	
		중	15	
		하	10	
5. 기타 (20점)	○ 작년도 정산 평가 : 상 / 중 / 하 - 지방보조금사업 성과평가표 기준 [30점 이하(하) / 31점~70점(중) / 71점이상(상)] ○ 신규단체인 경우 : 중	상	20	
		중	15	
		하	10	
계		100		

※ 해당 사항 없을 시 배점 없음(0점)

6. 예 산 계 획(비목별 예산편성)

※ 단체 내부거래(인건비·임차 등), 다과회 경비, 식대, 격려금 등 경상적 경비 불가

비목	세목	사 업 비(천원)	산출기초
총 계		천원(100%)	
보조금		천원(%)	
일반운영비	사무관리비		○ ○
	행사운영비		○ ○
			○ ○
자부담		천원(%)	
			○ ○
			○ ○

※ 산출기초는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: 단가(원) × 회(명, 부 등)

예) 리플릿제작 500원 × 100부 = 50,000원

음향장비대여 200,000원 × 1식 × 2회 = 400,000원

※ 참고 : 지원금 사용이 바람직한 직접경비 사례 및 항목(예술활동 경비)

비 목	세 목	내 역	비 고
일반운영비	사무관리비	- 물품제작비 및 사무용품비 / 인쇄비 / 강사료 및 출연료, 원고료 등 / 홍보비 / 임차료(장소, 시설, 악기 등) 등	개인 사례비 125,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이행
	행사운영비	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- 홍보유인물, 초청장 등 제작, 임차료, 강사료 등	

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

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강진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하겠으며, 귀 강진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.

아울러,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강진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,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.

< 벌칙 규정(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) >

○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(제37조부터 제39조)

제37조(벌칙)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

제38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
2.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

제39조(벌칙)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
2.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
3.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

○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(제40조)

제40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·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2025. . .

단체명 :	대표 :	(서명)
문화예술진흥기금 책임관리자 직책 :	성명 :	(서명)
문화예술진흥기금 실무책임자 직책 :	성명 :	(서명)